# 교워급여관리위원회 규정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"본 대학교"라 한다) 교원 급여에 관한 합리적 정책 결정 및 관리를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원급여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해당 교원의 소속기관장을 위원으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9. 8. 1., 2021. 3. 1.)
 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④ 간사는 교무부처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급여 정책에 관한 사항
  - 2. 급여 책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
  - 3. 개별적 급여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
- **제4조 (위원회의 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5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7조 (운영세칙)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8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.
- 제9조 (비밀유지의무) 위원장,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,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 대학교에 제반 손해가 발생시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- 제10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19. 8. 1.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'사무처'를 '총무처'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